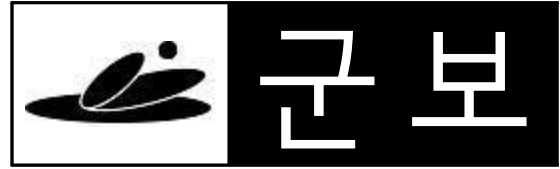


예 산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653호 2022. 3. 3.(목)

고 시

- 예산군 고시 제2022-32호 :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1

공 고

- 예산군 공고 제2022-406호 : 백설농부 관광농원 개발계획 승인 2

입법예고

- 예산군 공고 제2022-370호 :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 예산군 공고 제2022-372호 : 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10
- 예산군 공고 제2022-385호 : 예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1

회 람									
--------	--	--	--	--	--	--	--	--	--

발행 예 산 군 (편집 기획담당관 ☎ 339-7144)

예산군 고시 제2022-32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 제12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03. 02.

예 산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 변경

종전주소	변경 전 도로명주소	변경 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 폐지

종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주소정책팀**(☎041-339-7166~9)으로 문의 또는 **주소정보누리집(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사용합니다.

예산군 고시 제2022-406호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승인 고시

충남 예산군 봉산면 궁평리 110번지 외 3필지에 농어촌정비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승인내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2년 3월 3 일

예 산 군 수

1. 사 업 명 : 관광농원 조성
2. 사 업 자
 - 신청자 : 권**
 - 주 소 : 충남 예산군 봉산면 봉산로 516
3. 관광농원 승인 현황
 - 명 칭 : 백설농부 관광농원
 - 위 치 : 충남 예산군 봉산면 궁평리 110번지 외 3필지
 - 규모(조성면적) : 6,374㎡
 - 기본시설 : 5,034㎡(화훼·과수 체험장)
 - 기타시설 : 1,340㎡(일반음식점, 판매장 등)
 - 사 업 비 : 400백만원(융자 50 / 자담 350)
 - 승인일자 : 2022. 3. 3.
 - 사업기간 : 2022. 3. 3. ~ 2022. 12. 31.

예산군 공고 제2022 - 370호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2월 28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충남형 교통카드 지원대상을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아동·청소년까지 확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이용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지원대상(아동·청소년) 확대(안 제4조 및 별표)
 - (개정안)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아동·청소년 할인율 100%

- “대중교통운영자” 정의 및 책무 추가(안 제2조 및 제3조)
- 그 밖에 띄어쓰기 정비(안 제2조)

4. 입법예고기간 : 2022. 02. 28. ~ 2022. 03. 20. (20일간)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수(참조: 예산군 건설교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보내실 곳 :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
 -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우편번호 : 32435)
 - 전화 : 041)339-7693, 팩스 : 041)339-7659
- 4)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팩스제출 시 사전 전화통보 요망)
- 5)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
【☎(041)339-76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
 2.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란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운영지침」 제2조”를 “란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아동·청소년

5.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 4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중교통운영자는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협력하고, 노인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

버스 이용요금 지원대상 및 할인율(제4조 관련)

구 분	지원대상	할인율	비 고
1. 노인	가. 만 75세 이상인 사람	100분의 100	
2. 등록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	100분의 100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분의 100	
3. 국가유공자. 5.18민주화 유공자	가.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수권유족 1명)	100분의 100	
	나. 제2조제2호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5.18민주화유공자 (애국지사, 상이등급 1급, 5.18 부상자 1급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00분의 100	
	다. 제2조제2호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유족(수권유족 1명)	100분의 100	
4. 아동·청소년	가.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아동·청소년	100분의 100 (1일 무료횡수 3회)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마. “공영버스”란 「<u>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운영지침</u>」 제2조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p> <p>2. (생략)</p> <p><신설></p> <p><신설></p> <p>제3조(책무)</p> <p>①·② (생략)</p> <p><신설></p>	<p>제2조(정의) ----- ----- ----.</p> <p>1. (현행과 같음)</p> <p>마.----- 「<u>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u>」 -- ----- -----</p> <p>2. (현행과 같음)</p> <p>사.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아동·청소년</p> <p>5.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p> <p>제3조(책무)</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대중교통운영자는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협력하고, 노인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p>

[별표]

**대중교통 수단별 할인을
(제4조 관련)**

구 분	지원대상	할인율	비고
1. 노인	가. 만 75세 이상인 사람	100분의 100	
2. 등록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	100분의 100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분의 100	
3. 국가유공자. 5.18민주화 유공자	가.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수권유족 1명)	100분의 100	
	나. 제2조제2호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애국지사, 상이등급 1급, 5.18 부상자 1급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00분의 100	
	다. 제2조제2호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유족(수권유족 1명)	100분의 100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

**버스 이용요금 지원대상 및
할인율(제4조 관련)**

구 분	지원대상	할인율	비고
1. 노인	가. 만 75세 이상인 사람	100분의 100	
2. 등록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	100분의 100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분의 100	
3. 국가유공자. 5.18민주화 유공자	가.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수권유족 1명)	100분의 100	
	나. 제2조제2호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애국지사, 상이등급 1급, 5.18 부상자 1급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00분의 100	
	다. 제2조제2호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유족(수권유족 1명)	100분의 100	
4. 아동.청소년	가.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아동. 청소년	100분의 100	

예산군 공고 제2022 - 372호

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2월 28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운행횟수 확대 민원요구에 따라 섬김택시 마을당 운행횟수를 현행 1일 4회에서 1일 6회로 확대운영 하고자함.
-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섬김택시 운영 대상마을을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섬김택시 대상횟수 확대
 - 섬김택시 마을별 1일 운행횟수 확대(4회 ⇒ 6회)

○ 섬김택시 운행 대상마을의 확대

- 추가마을 신청에 따른 대상마을 확대(59개 마을 ⇒ 62개 마을)

4. 입법예고기간 : 2022. 02. 28. ~ 2022. 03. 20. (20일간)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수(참조: 예산군 건설교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

-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우편번호 : 32435)

- 전화 : 041)339-7693, 팩스 : 041)339-7659

4)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팩스제출 시 사전 전화통보 요망)

5)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

【☎(041)339-76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

2.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규 칙 명 : 「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예산군 규칙 제 호

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1일 4회”를 “1일 6회”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섬김택시 운행대상 마을(제2조 관련)

읍·면	마을명(자연마을)	읍·면	마을명(자연마을)
예산읍	향천리	대흥면	교촌2리
삼교읍	이리	응봉면	노화2리
	상성1리		후사리
	성2리		지석리
	용동3리		증곡리
	상하1리(초막골)	덕산면	둔2리
	상하2리		대동리
	두5리		낙상1리
	안치리		낙상2리
	신가1리(꽃산마을)	봉산면	고도리
	신가2리		구암리
	신가4리		옥전리
	대술면		시산1리
마전1리(삼바실)			효교2리
시산2리(사쟁이)			화전1리
신양면	무봉리	화전2리(고상골)	
	황계리	옹안리(안옹안)	
	서계양1리	마교리(진골)	
	서계양2리	고덕면	사1리
	차동리(불문리)		사2리
	여래미리(고재고랑)		용3리
하천리(산막)	지곡리		
광시면	운산1리	구만3리	
	운산2리	호음1리(독거노인공동체)	
	구례리	호음2리(공수골)	
	마사리	신암면	탄중리
	용두리		오산2리
지곡리	조곡1리		
대흥면	송지대야리	용궁2리	
	탄방리	오가면	신석1리
	교촌1리		신월1리

■ 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섬김택시 운행구간 및 지원금액(제3조 관련)

(단위: 원)

읍·면	마을명(자연마을)	출발지	도착지	기준요금	본인부담	군지원액	오지보상
계	62개 마을	372회		532,500	117,200	384,500	30,800
예산읍	향천리	만석골	쌍송배기	5,200	1,500	3,700	
삼교읍	이 리	외뜸말	삼교정류소	8,300	1,500	6,800	
	상성1리	마을회관	삼교정류소	7,800	1,500	6,300	
	성2리	마을회관	삼교정류소	6,800	1,500	5,300	
	용동3리	마을회관	삼교정류소	4,800	1,500	3,300	
	상하1리(초막골)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4,800	1,500	3,300	
	상하2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5,300	1,500	3,800	
	두5리	마을회관	삼교정류소	4,800	1,500	3,300	
	안치리	마을회관	삼교정류소	8,500	1,500	7,000	
	신가1리(꽃산마을)	꽃산마을	삼교정류소	3,300	1,500	1,800	
	신가2리	마을회관	삼교정류소	3,600	1,500	2,100	
	신가4리	마을회관	삼교정류소	7,300	1,500	5,800	
대술면	시산1리	전불	쌍송배기	6,500	1,900	4,600	
	마전1리(삼바실)	삼바실	쌍송배기	14,000	4,200	9,800	
	시산2리(사쟁이)	사쟁이	쌍송배기	6,800	2,000	4,800	
신양면	무봉리	마을회관	신양정류소	8,000	1,500	6,500	
	황계리	노인정	신양정류소	8,100	1,500	6,600	
	서계양1리	마을회관	신양정류소	6,700	1,500	5,200	
	서계양2리	마을회관	신양정류소	7,000	1,500	5,500	
	차동리(불문리)	불문리	신양정류소	10,000	1,500	8,500	
	여래미리(고재고랑)	고재고랑	신양정류소	9,000	1,500	7,500	
	하천리(산막)	산막	신양정류소	8,100	1,500	6,600	
광시면	운산1리	마을회관	광시정류소	7,700	1,500	6,200	
	운산2리	마을회관	광시정류소	7,000	1,500	5,500	
	구례리	마을회관	광시정류소	6,900	1,500	5,400	
	마사리	마을회관	광시정류소	8,000	1,500	6,500	
	용두리	마을회관	광시정류소	7,000	1,500	5,500	
대흥면	지곡리	마을회관	쌍송배기	9,800	2,900	6,900	
	송지대야리	마을회관	쌍송배기	14,600	4,300	10,300	
	탄방리	상탄방	쌍송배기	13,400	4,000	9,400	
	교촌1리	마을회관	예산역	16,700	5,000	11,700	
	교촌2리	마을회관	예산역	16,700	5,000	11,700	

읍·면	마을명(자연마을)	출발지	도착지	기준요금	본인부담	군지원액	오지보상
응봉면	노화2리	마을회관 위	응봉정류소	7,600	1,500	3,300	2,800
	후사리	안뒀절	예산역	11,000	3,300	7,700	
	지석리	원골, 고인돌	응봉정류소	8,000	1,500	3,700	2,800
	중곡리	마을회관	응봉정류소	6,800	1,500	2,500	2,800
덕산면	둔2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10,000	1,500	8,500	
	대동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13,600	1,500	12,100	
	낙상1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15,800	1,500	14,300	
	낙상2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15,500	1,500	14,000	
봉산면	고도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9,800	1,500	5,500	2,800
	구암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8,300	1,500	4,000	2,800
	옥전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10,500	1,500	6,200	2,800
	시동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9,800	1,500	5,500	2,800
	효교2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6,000	1,500	4,500	
	화전1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8,900	1,500	4,600	2,800
	화전2리(고상골)	고상골	고덕정류소	6,200	1,500	1,900	2,800
	옹안리(안옹안)	안옹안	고덕정류소	9,300	1,500	5,000	2,800
	마교리(진골)	진골	고덕정류소	8,000	1,500	3,700	2,800
고덕면	사1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5,800	1,500	4,300	
	사2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5,800	1,500	4,300	
	용3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9,500	1,500	8,000	
	지곡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5,800	1,500	4,300	
	구만3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7,700	1,500	6,200	
	호음1리 (독거노인공동체)	독거노인공동체	고덕정류소	10,500	1,500	9,000	
	호음2리(공수골)	공수골	고덕정류소	10,000	1,500	8,500	
신암면	탄중리	마을회관	예산터미널	7,800	2,300	5,500	
	오산2리	마을회관	예산터미널	9,000	2,700	6,300	
	조곡1리	마을회관	예산터미널	10,500	3,100	7,400	
	용궁2리	마을회관	신례원정류소	10,000	3,000	7,000	
오가면	신석1리	마을회관	오가정류소	7,000	1,500	5,500	
	신원1리	마을회관	예산터미널	5,500	1,500	4,000	

※ 산정기준

- 기준요금이란 해당 마을에서 세부 목적지까지의 통상 택시요금
- 마을에서 해당 읍면 소재지까지는 기준요금에서 버스기본요금 1,500원을 제외한 금액지원
- 예산읍 인근 읍면 마을에서 예산읍까지 운행하는 경우 기준요금의 100분의 30(십원단위 절삭)을 주민이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 지원
- 연장운행 등으로 택시요금이 기준요금을 초과하는 경우 주민 부담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이용의 제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섬김택시 운 행 대상 마을에 대해 <u>1일 4회</u> 의 사용 횟수 제한을 둔다.----- ----- -----	제4조(이용의 제한) ----- ----- ----- <u>1일 6회</u> ----- ----- -----
[별표 1] <u>섬김택시 운행대상 마을</u> (제2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1] <u>섬김택시 운행대상 마을</u> (제2조 관련) (단위 : 원)

읍.면	마을명(자연부락)	읍.면	마을명(자연부락)	
예산읍	향천리	응봉면	노화2리	
삽교읍	이리		후사리	
	상성1리		지석리	
	성2리		증곡리	
	용동3리		둔2리	
	상하1리 초막골		대동리	
	상하2리		낙상1리	
	두5리		낙상2리	
	안치리		고도리	
신양면	신가1리 꽃산마을		구암리	
	신가2리	옥전리		
	신가4리	시동리		
	시산1리	효교2리		
대술면	마전1리 삼바실	봉산면	화전1리	
시산2리 사쟁이	화전2리(고상골)			
무봉리	옹안리(안옹안)			
황계리	마교리(진골)			
신양면	서계양1리	고덕면	사1리	
	<신설>		사2리	
	차동리 불문리		용3리	
	여래미리 고재고랏		지곡리	
광시면	하천리 산막		구만3리	
	운산1리		<신설>	
	운산2리		<신설>	
	구례리		탄중리	
대흥면	마사리		신암면	오산2리
	용두리			조곡1리
	지곡리	용궁2리		
	송지대야리	신석1리		
대흥면	탄방리	오가면	신원1리	
	교촌1리			
	교촌2리			

읍.면	마을명(자연부락)	읍.면	마을명(자연부락)	
예산읍	향천리	응봉면	노화2리	
삽교읍	이리		후사리	
	상성1리		지석리	
	성2리		증곡리	
	용동3리		둔2리	
	상하1리 (초막골)		대동리	
	상하2리		낙상1리	
	두5리		낙상2리	
	안치리		고도리	
신양면	신가1리 (꽃산마을)		구암리	
	신가2리	옥전리		
	신가4리	시동리		
	시산1리	효교2리		
대술면	마전1리 (삼바실)	봉산면	화전1리	
시산2리 (사쟁이)	화전2리(고상골)			
무봉리	옹안리(안옹안)			
황계리	마교리(진골)			
신양면	서계양1리	고덕면	사1리	
	서계양2리		사2리	
	차동리 (불문리)		용3리	
	여래미리 (고재고랏)		지곡리	
광시면	하천리 (산막)		구만3리	
	운산1리		호읍1리 (독거노인공동체)	
	운산2리		호읍2리(공수품)	
	구례리		탄중리	
대흥면	마사리		신암면	오산2리
	용두리			조곡1리
	지곡리	용궁2리		
	송지대야리	신석1리		
대흥면	탄방리	오가면	신원1리	
	교촌1리			
	교촌2리			

[별표 2]

섬김택시 운행구간 및 지원금액
(제3조 관련)

(단위 : 원)

읍면	마을명(자연부락)	출발지	도착지	기준요금	본인부담	군지원액	오지보상	
계	59개 마을	236회		505.00 0	112.70 0	361.50 0	30.80 0	
예산읍	향천리	만석골	쌍송배기	5,200	1,500	3,700		
	삽교읍	이리	외뜸말	삽교정류소	8,300	1,500	6,800	
		상성1리	마을회관	삽교정류소	7,800	1,500	6,300	
		성2리	마을회관	삽교정류소	6,800	1,500	5,300	
		용동3리	마을회관	삽교정류소	4,800	1,500	3,300	

[별표 2]

섬김택시 운행구간 및 지원금액
(제3조 관련)

(단위 : 원)

읍면	마을명(자연부락)	출발지	도착지	기준요금	본인부담	군지원액	오지보상	
계	62개 마을	372회		532.50 0	118.20 0	383.50 0	30.80 0	
예산읍	향천리	만석골	쌍송배기	5,200	1,500	3,700		
	삽교읍	이리	외뜸말	삽교정류소	8,300	1,500	6,800	
		상성1리	마을회관	삽교정류소	7,800	1,500	6,300	
		성2리	마을회관	삽교정류소	6,800	1,500	5,300	
		용동3리	마을회관	삽교정류소	4,800	1,500	3,300	

	상하1리 (초막골)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4,800	1,500	3,300	
	상하2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5,300	1,500	3,800	
	두5리	마을회관	삽교정류소	4,800	1,500	3,300	
	안치리	마을회관	삽교정류소	8,500	1,500	7,000	
	신가1리 (꽃산마을)	꽃산마을	삽교정류소	3,300	1,500	1,800	
	신가2리	마을회관	삽교정류소	3,600	1,500	2,100	
	신가4리	마을회관	삽교정류소	7,300	1,500	5,800	
대솔면	시산1리	전불	쌍송배기	6,500	1,900	4,600	
	마전1리 (삼바실)	삼바실	쌍송배기	14,000	4,200	9,800	
신양면	시산2리 (사쟁이)	사쟁이	쌍송배기	6,800	2,000	4,800	
	무봉리	마을회관	신양정류소	8,000	1,500	6,500	
	황계리	노인정	신양정류소	8,100	1,500	6,600	
	서계1양리	마을회관	신양정류소	6,700	1,500	5,200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차동리(불문리)	불문리	신양정류소	10,000	1,500	8,500	
	여래미리 (고재고랑)	고재고랑	신양정류소	9,000	1,500	7,500	
광시면	하천리(산막)	산막	신양정류소	8,100	1,500	6,600	
	운산1리	마을회관	광시정류소	7,700	1,500	6,200	
	운산2리	마을회관	광시정류소	7,000	1,500	5,500	
	구례리	마을회관	광시정류소	6,900	1,500	5,400	
	마사리	마을회관	광시정류소	8,000	1,500	6,500	
대흥면	용두리	마을회관	광시정류소	7,000	1,500	5,500	
	지곡리	마을회관	쌍송배기	9,800	3,100	6,700	
	송지대야리	마을회관	쌍송배기	14,600	4,500	10,100	
	탄방리	상단방	쌍송배기	13,400	4,200	9,200	
	교촌1리	마을회관	예산역	16,700	5,200	11,500	
웅양면	교촌2리	마을회관	예산역	16,700	5,200	11,500	
	노화2리	마을회관 위	웅봉정류소	7,600	1,500	3,300	2,800
	후사리	안뫼절	예산역	11,000	3,300	7,700	
	지석리	원골, 고인돌	웅봉정류소	8,000	1,500	3,700	2,800
덕산면	중곡리	마을회관	웅봉정류소	6,800	1,500	2,500	2,800
	둔2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10,000	1,500	8,500	
	대동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13,600	1,500	12,100	
	낙상1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15,800	1,500	14,300	
봉산면	낙상2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15,500	1,500	14,000	
	고도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9,800	1,500	5,500	2,800
	구암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8,300	1,500	4,000	2,800
	옥전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10,500	1,500	6,200	2,800
	시동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9,800	1,500	5,500	2,800
	효교2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6,000	1,500	4,500	
	화전1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8,900	1,500	4,600	2,800
	화전2리 (고장골)	고장골	고덕정류소	6,200	1,500	1,900	2,800
	용안리 (안동안)	안동안	고덕정류소	9,300	1,500	5,000	2,800
	마교리 (진골)	진골	고덕정류소	8,000	1,500	3,700	2,800
고덕면	사1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5,800	1,500	4,300	
	사2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5,800	1,500	4,300	
	용3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9,500	1,500	8,000	
	지곡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5,800	1,500	4,300	
	구만3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7,700	1,500	6,200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상하1리 (초막골)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4,800	1,500	3,300	
	상하2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5,300	1,500	3,800	
	두5리	마을회관	삽교정류소	4,800	1,500	3,300	
	안치리	마을회관	삽교정류소	8,500	1,500	7,000	
	신가1리 (꽃산마을)	꽃산마을	삽교정류소	3,300	1,500	1,800	
	신가2리	마을회관	삽교정류소	3,600	1,500	2,100	
	신가4리	마을회관	삽교정류소	7,300	1,500	5,800	
대솔면	시산1리	전불	쌍송배기	6,500	1,900	4,600	
	마전1리 (삼바실)	삼바실	쌍송배기	14,000	4,200	9,800	
신양면	시산2리 (사쟁이)	사쟁이	쌍송배기	6,800	2,000	4,800	
	무봉리	마을회관	신양정류소	8,000	1,500	6,500	
	황계리	노인정	신양정류소	8,100	1,500	6,600	
	서계1양리	마을회관	신양정류소	6,700	1,500	5,200	
	서계양2리	마을회관	신양정류소	7,000	1,500	5,500	
	차동리(불문리)	불문리	신양정류소	10,000	1,500	8,500	
	여래미리 (고재고랑)	고재고랑	신양정류소	9,000	1,500	7,500	
광시면	하천리(산막)	산막	신양정류소	8,100	1,500	6,600	
	운산1리	마을회관	광시정류소	7,700	1,500	6,200	
	운산2리	마을회관	광시정류소	7,000	1,500	5,500	
	구례리	마을회관	광시정류소	6,900	1,500	5,400	
	마사리	마을회관	광시정류소	8,000	1,500	6,500	
대흥면	용두리	마을회관	광시정류소	7,000	1,500	5,500	
	지곡리	마을회관	쌍송배기	9,800	3,100	6,700	
	송지대야리	마을회관	쌍송배기	14,600	4,500	10,100	
	탄방리	상단방	쌍송배기	13,400	4,200	9,200	
	교촌1리	마을회관	예산역	16,700	5,200	11,500	
웅양면	교촌2리	마을회관	예산역	16,700	5,200	11,500	
	노화2리	마을회관 위	웅봉정류소	7,600	1,500	3,300	2,800
	후사리	안뫼절	예산역	11,000	3,300	7,700	
	지석리	원골, 고인돌	웅봉정류소	8,000	1,500	3,700	2,800
덕산면	중곡리	마을회관	웅봉정류소	6,800	1,500	2,500	2,800
	둔2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10,000	1,500	8,500	
	대동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13,600	1,500	12,100	
	낙상1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15,800	1,500	14,300	
봉산면	낙상2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15,500	1,500	14,000	
	고도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9,800	1,500	5,500	2,800
	구암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8,300	1,500	4,000	2,800
	옥전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10,500	1,500	6,200	2,800
	시동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9,800	1,500	5,500	2,800
	효교2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6,000	1,500	4,500	
	화전1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8,900	1,500	4,600	2,800
	화전2리 (고장골)	고장골	고덕정류소	6,200	1,500	1,900	2,800
	용안리 (안동안)	안동안	고덕정류소	9,300	1,500	5,000	2,800
	마교리 (진골)	진골	고덕정류소	8,000	1,500	3,700	2,800
고덕면	사1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5,800	1,500	4,300	
	사2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5,800	1,500	4,300	
	용3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9,500	1,500	8,000	
	지곡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5,800	1,500	4,300	
	구만3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7,700	1,500	6,200	
	호음1리	독거노인	고덕정류소	10,500	1,500	9,000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산남면	탄중리	마을회관	예산터미널	7,800	2,300	5,500
	오산2리	마을회관	예산터미널	9,000	2,700	6,300
	조곡1리	마을회관	예산터미널	10,500	3,100	7,400
	용궁2리	마을회관	산태원정류소	10,000	3,000	7,000
오가면	신석1리	마을회관	오가정류소	7,000	1,500	5,500
	신원1리	마을회관	예산터미널	5,500	1,500	4,000

※ 산정기준

- 기준요금이란 해당 마을에서 세부 목적지까지의 통상 택시요금
- 마을에서 해당 읍면 소재지까지는 기준요금에서 버스기본요금 1,500원을 제외한 금액지원
- 예산을 인근 읍면 마을에서 예산읍까지 운행하는 경우 기준요금의 100분의 30(십원단위 절삭)을 주민이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 지원
- 연장운행 등으로 택시요금이 기준요금을 초과하는 경우 주민 부담

	(독거노인 공동체)	공동체				
	홍읍2리 (공수골)	공수골	고덕정류소	10,000	1,500	8,500
산남면	탄중리	마을회관	예산터미널	7,800	2,300	5,500
	오산2리	마을회관	예산터미널	9,000	2,700	6,300
	조곡1리	마을회관	예산터미널	10,500	3,100	7,400
	용궁2리	마을회관	산태원정류소	10,000	3,000	7,000
오가면	신석1리	마을회관	오가정류소	7,000	1,500	5,500
	신원1리	마을회관	예산터미널	5,500	1,500	4,000

※ 산정기준

- 기준요금이란 해당 마을에서 세부 목적지까지의 통상 택시요금
- 마을에서 해당 읍면 소재지까지는 기준요금에서 버스기본요금 1,500원을 제외한 금액지원
- 예산을 인근 읍면 마을에서 예산읍까지 운행하는 경우 기준요금의 100분의 30(십원단위 절삭)을 주민이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 지원
- 연장운행 등으로 택시요금이 기준요금을 초과하는 경우 주민 부담

예산군 공고 제2022-385호

예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3월 3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예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회의참석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회의참석 수당 지급근거 신설(안 제3조의2)

4. 입법예고 기간: 2022. 3. 3. ~ 3. 21.(18일간)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있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1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 총무과 새마을규제개혁팀(☎ 041-339-7233, FAX : 041-339-72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편발송 : (우편번호 32435)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 총무과 새마을규제개혁팀
- 전자메일 : heyday1@korea.kr
- 기타 문의 관련 : ☎(041)339-7233, fax : (041)339-7209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예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예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붙임 2]

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회의 수당) 읍·면장은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바르게살기운동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3조의2(회의 수당) 읍·면장은</u> <u>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u> <u>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u> <u>석한 바르게살기운동회원에게</u> <u>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수당을</u> <u>지급할 수 있다.</u>